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	<h1>보도자료</h1>		
	보도	2017. 1. 4.(수) 조간	
책임자	경찰청 수사1과 박 찬 우 경정 (02-3150-2168)	담당자	김 동 연 경감(02-3150-1777)
	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성 수 용 부국장(02-3145-8130) 김 상 록 팀장 (02-3145-8129)		안태승 선임조사역(02-3145-8123) 최종천 수석조사역(02-3145-8156)

저금리 시대에 민생경제를 위협하는,

투자사기·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!

-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 높아 -
- 사금융 이용시 대부업 등록여부·연이율 27.9% 이하 반드시 확인해야 -
- 전화·문자로 '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'며 선입금 요구시 100% 사기 -

□ 최근 현황

-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,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,

유사수신이란?	인허가·등록·신고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·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액 지급을 약정하고, 출자금·예금·예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투자사기 관련 검거 사례	<p>[유사수신] '14. 8월 ~ '15. 9월간 전국 18개 사무실을 개설,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%의 수익을 보장 하겠다며 24,000여명으로부터 2,900억원 편취한 65명 검거 (16. 5월, 서울 수서경찰서)</p>
	<p>[무등록 금융투자업] '14. 7월경 금융위 허가 없이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, 회원 2,000명으로부터 투자금 168억원을 입금 받아 6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6명 검거 (16. 7월 대구 달성경찰서)</p>
	<p>[부동산 투자사기] '11. 1월 ~ '16. 5월간, 부동산 매입 후 용도 변경하여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,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36억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(16. 7월 경기남부 안양만안경찰서)</p>

○ 생활비 등 자금수요는 높으나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, 불법 대부업·채권추심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.

※ 최근 불법사금융 검거현황 및 사례

구분	불법대부업		불법채권추심		유사수신	
	건수	인원	건수	인원	건수	인원
'15. 1~11월	719	1,515	184	315	212	1,030
'16. 1~11월	746	1,614	208	428	590	1,895
대비	+3.8%	+6.5%	+13.0%	+35.9%	+178.3%	+84.0%
검거사례	'16. 3월, 300만원 대출해 준 후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을 협박,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7개월간 3,300만원을 갈취, 피해자를 강간하고 알몸을 촬영한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(구속) (16. 11월, 인천 삼산경찰서)					

□ 이에 따라 경찰청(청장 이철성)과 금융감독원(원장 진웅섭)은,

- 각종 투자사기와 악질적인 고리사채는 서민층을 주요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어,
 -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면서,

특별단속 개요

- ▶ <단속기간> '16. 12. 12. ~ '17. 1. 31, (51일간)
- ▶ <중점 단속대상>
 - (투자사기) 유사수신, 불법 다단계, 기획부동산 사기, 주식·선물 투자사기
 - (불법사금융) 불법 채권추심, 무등록 대부업,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, '대출사기형' 보이스피싱 등

- 고수익을 빙자한 각종 금융사기에 현혹되거나,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최근 접수되는 각종 투자사기 수법을 살펴보면,

- <유사수신>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,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.

※ 유사수신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수법

- 광산, 임야, 펜션·빌라, 납골당·수목장, 상가, 카지노 등 부동산 사업
- 비상장주, 전자화폐, 외환투자, 해외펀드, 금융컨설팅, 증권투자업, 핀테크 사업
- 바이오제품, 의료기기, 게임물, 완구, 전기제품 등 제조업
- 영농·협동조합 명의로 산삼·송이·블루베리 등 각종 특용작물 사업
- 골동품 거래, 골드바, 프랜차이즈, 유통업 등 각종 투자사업 빙자

- '원금 보장, 1구좌당 매주 20% 수익 보장', '투자자 유치시 일정 수당 지급' 등 솔깃한 문구로 홍보하면서, 투자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,
-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'돌려막기'에 불과하다.
- 전국에 다수의 사무실을 개설하거나, 각종 사업설명회, 인터넷 커뮤니티, 투자 동호회·주식 동아리 등에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면서, 허위의 자격증·계약서·특허증·신기술 검증서 등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.

※ 주의가 필요한 신종 수법

- ① 지자체에 인가만 받은 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 '소비자 생활협동조합'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위장하여, 농산물 유통·마트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조합원 가입시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수법
- ② 전자화폐·금 또는 외환 거래 사업에 세계적인 금융기업이 투자하였다면서, 가짜 모바일 앱(app)을 이용해 실제 주식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격 등락 그래프 등을 보여주는 수법

- <불법 금융투자업> 또한, 무허가·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, 자신만의 노하우로 특별한 운용 방법이 있다거나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등, 고수익을 보장하며 주식·선물·외환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다.

- 그러나, 실제는 모집한 투자금을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모두 잃기도 하고, 외제차·유형비·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.

※ 이러한 경우 투자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손실을 모두 감수할 가능성이 높음

※ 주의가 필요한 신중 수법

정식 인허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주식·선물거래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, 모바일 거래용 앱이나 인터넷용 홈트레이딩시스템(HTS)을 제공하는 수법

-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권유시, 반드시 금융감독원 ‘서민금융 1332’ 홈페이지(s1332.fss.or.kr, ☎1332)에서 정상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<‘기획 부동산’ 사기>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,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·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‘기획 부동산’ 사기도 끊이지 않는다.
- 개발 예정지 인근에서 ‘뗏다방’식으로 투자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고, 싼 값에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분할하여 기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는 수법이다.
 - 실제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소유자인지 여부,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 매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.

- 부동산 매입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건축과(지적과)나 등기소에서 부동산 대장·등기부, 토지용도, 인허가 관계 등을 조회하고,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luris.molit.go.kr)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지번별 행위제한내용 또는 각종 고시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.

※ 주의가 필요한 신증 분양사기 수법

미분양된 아파트를 '프리미엄'이 붙은 전매된 아파트라고 속여 비싼 값에 분양하거나,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싼 값으로 분양해주겠다는 등 가짜 분양대행사 영업

□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계획이 있을 경우,

- 반드시 금융감독원 '서민금융 1332' 홈페이지(s1332.fss.or.kr, ☎1332)나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적인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, 대부계약시 계약서·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.
- 현재 대부업자가 연이율 27.9%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법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행위이며, 27.9%를 넘는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.
 - ※ 선이자, 사례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연체료, 체당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,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는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.
- 채무독촉의 부담 때문에 또 다른 사채를 빌리기 보다는,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의 채무조정 제도나 법원의 회생·파산 등 법적절차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.

- 대부업자로부터 폭행·협박을 당하거나, 불법 채권추심행위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면, 경찰청(112)·금융감독원 ‘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’(1332)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※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

-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·협박·체포 또는 감금하거나,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
-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

-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(21시~08시)에 방문
-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·글·음향·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- ③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
- ④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

-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
-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의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, 채무금액·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

-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와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, 관련기관이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.

□ 특히,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‘대출사기형’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-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‘은행·저축은행·대부업체·캐피탈 등 금융회사’라고 하면서, ‘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용을 보내라’, 또는 ‘수수료·보증금·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’고 한다면, 100% ‘대출사기형’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.

※ '16.1 ~ 11월간, '대출사기형' 보이스피싱 12,318건(814억원) 피해 발생

※ 주의가 필요한 신중 수법

(대환대출형)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 피해자에게 대부업자를 연결, 실제 대출금을 지급받게 한 뒤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수수료 명목 등으로 편취

-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이미 유출된 개인신용정보나 대출 상담이력 정보를 보유하고, 치밀한 범행 시나리오와 전문 금융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, 실제 금융기관 직원의 전화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다.
-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광고 전화나 문자를 그대로 믿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, 일단 전화를 먼저 끊고 공식 통로인 금감원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.

※ 휴대폰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이 전화를 받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114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확인

□ 마지막으로,

- 각종 투자사기·불법 사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, 경찰·금융감독원 등의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.
-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,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, 범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,
 - 금융감독원 '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'(☎1332)와 상담하거나, 경찰청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·제보해주시기를 당부드렸다.

- 본 보도자료는 경찰청·금융감독원 동시 배포됩니다.-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1과 경정 박찬우(☎ 02-3150-2168)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김상록(☎ 02-3145-81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